판례토크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판결 분석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I. 사건의 개요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로, 2018년 7월 문을 연 뒤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 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1]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였는데, 2022년 2월 위 사이트

1) 운영자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언론인터뷰 등에 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본 판례평석에도 그의 실명을 기재하였다.

의 이름을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바꾸고 운영을 재개하였다.[2]

배드파더스가 유명세를 탄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미지급 부모의 얼굴, 직업, 직장, 주소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운영자 구본창 씨와 전 배우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의뢰한 부모들의 주장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초강수 조치로 인해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에서 1,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1심은 배드파더스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2심은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에서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어떤 근거로 판단을 달리한 것일까.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이유를 하나씩 짚다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법적, 논쟁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II. 대상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가. 기소까지의 경위 및 1심 판결의 요지

1) '배드파더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신상이 공개되었던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은 운영자 구본창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모아(9명 중 7명 기소의견)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은 구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였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대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구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JTBC (2022. 2. 18). 「'배드파더스' 이름 바꿔 가동…유죄판결에도 다시 문 연 이유」 참조. URL: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7550#none

그렇다면 판례는 어느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까. 판례는 일관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은 문언상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성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가해가 행위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3)]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①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②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③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④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배드파더스 1심 재판부는 구본창 씨가 배드파더스에 적시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은 ①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라는 점, ② 구 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해 왔다는 점, ③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비하, 모욕,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④ 양육비 이행은 여러 사람의 주요 관심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⑤ 무엇보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 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 등을 배드파더스에 적시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내린 근거로 판단하였다.

나. 유죄로 변경된 2심 판결의 핵심 키워드 – '허용되지 않는 사적 제재', '얼굴' 등

1) 검찰의 항소이유

1심에서 구본창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였다. 검찰의 항소이유 요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과도해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충분히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회채팅방에 '3,000억 원대 ICO(Initial Coin Offerings) 코인투자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B가 OO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실제 B가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맞았으나 당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이 보였고,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주된 동기는 B를 비방하는 데 있다기보다 금융업계에서 B와 B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즉, 설사 적시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검찰의 주장은, ①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촉구'하는 차원이 아닌 '압박'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② 사이트의 제목, 게시글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 모욕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피해자들의 개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공개하였다, ④ 피해자들은 전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영자 구본창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2) 양육비 문제의 공익성과 사적제재의 허용 범위

2심 재판부는 우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단체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가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공적인 사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면 이혼을 한 사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 등 사생활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데,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양육비 채권 중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3) 사이트의 운영목적, 공개된 신상정보의 인격권 침해 등

항소심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운영 목적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점, 운영자 구본창 씨가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배드파더스의 주된 목적은 사적 압박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신속하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결국 신상정보 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하였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역, 얼굴사진, 직장명 등 사생활 비밀과 관련한 엄밀한 부분까지 공개한 것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26쪽 분량의 2심 판결문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오는데, 2심 법원은 "얼굴은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나 유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배드파더스가 과도하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글 게시와 삭제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부모 일방의 제보내용에만 의존할 뿐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나 사실관계 확인 등의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Ⅲ. 판결에 대한 검토

배드파더스 판결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 내지 사적단체가 상대방을 '명예형(수치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로 한정해 허용해야 할지, 공익적 목적의 신상공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지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금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해외 입법례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우되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논의의 첫 발은 떼었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점들과는 별개로 배드파더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위 판결이 양육비 이행 문제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첨언하자면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나중에 개인에게 이를 구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안착하였다면 우리 사회에 배드파더스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